

의안번호	제 120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최미애 의원 외 7인
발의연월일	2007년 6월 4일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0

발의연월일 : 2007년 6월 4일

발 의 자 : 최미애 의원외 7인

제안이유

-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여성의 권익증진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인력개발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여성가족부(직전에는 노동부)에서 설치운영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방이양에 따른 후속조치임

주요내용

- 가. 도지사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성인구 다수 거주지역 등에 우선 설치하도록 함(제41조).
- 나. 센터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교육사업, 취업 및 창업지원 사업, 후생 복지사업 등으로 함(제42조).
- 다. 도지사는 센터를 여성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5조).
- 라.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47조).

참고사항

-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중소기업”을 “기업”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저소득 모자가정”을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제37조제1항중 “여성정책담당사무관”을 “여성정책과 주무사무관”으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제40조(설치 및 명칭표시)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에 의한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제41조(설치지역 및 기준) ①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 필요성이 큰 지역에 우선 설치한다.

1. 여성인구 다수거주 지역
2. 사업체 등 여성인력수요가 많은 지역
3. 유사기능을 가진 시설의 유무를 고려하여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지역

② 센터는 825제곱미터(250평) 이상의 면적을 지역여건에 맞게 확보하여야 하며,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교육실 및 강의실(실습실 포함)
3. 회의실
4.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
5. 유아놀이방
6. 강당

7. 창업보육실
8. 식당
9. 장애인 편의시설
10.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제42조(주요사업) 센터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사업 : 여성의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과정 개설·운영
2. 취업 및 창업지원사업 :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3. 후생복지사업 : 수강생의 자녀를 위한 유아놀이방 운영, 기타 휴게실, 식당 등 이용자 편의시설 운영
4. 기타 여성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3조(이용대상) 센터는 모든 여성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제44조(비용의 수납) ①센터는 센터 이용자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②수납한 비용은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45조(운영의 위탁) ①도지사는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법 제33조 제3항에 의거 센터의 운영을 여성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여성단체는 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여성단체를 말한다.

제46조(관리운영규정) ①수탁자는 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비용의 환불 그 밖에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당해 관리운영규정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7조(설립비·운영비 등의 지원) ①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시설비,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비와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시설기자재 설치비, 교육훈련경비,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운영비 지원시 시설면적, 교육실적, 취업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설립비 및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운영위원회) ①센터에는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자격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49조(지도·감독) 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하여 필요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사항·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0조(관계법령의 적용) ①센터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②센터는 취업정보 제공·상담·알선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직업안정법령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5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여성발전기본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5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여성발전기본법」 부칙 제3조에 의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별표1】

명칭 : 충청북도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
○
충청북도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충청북도지원
○○(지역명) 여성인력개발센터

위치 : 충청북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빌딩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4조(경제활동의 지원) ① (생략) ② (생략) ③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u>중소기업</u>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p>	<p>제14조(경제활동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기업----- ----- -----.</p>
<p>제15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생략) ② 도지사는 <u>저소득 모자가정</u>·미혼모·가출여성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하 생략)</p>	<p>제15조(여성의 복지증진) ①(현행과 같음) ② ---- 저소득 모부자가정----- ----- -----, (이하 생략)</p>
<p>제25조(구성 및 임기) ①, ②, ③, ④, (생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u>여성정책담당사무관</u>이 된다.</p>	<p>제25조(구성 및 임기) ①, ②, ③, ④, (현행과 같음) ⑤ ----- ----- 여성정책과 주무사무관-----.</p>
<p>제3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복지여성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u>여성정책담당사무관</u>으로 한다.</p>	<p>제37조(회계공무원) ① ----- ----- ----- --- 여성정책과 주무사무관-----.</p>

현행	개정안
<p>제40조(시행규칙) (생략)</p> <p><신설></p>	<p>제40조(삭제)</p> <p>제5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p> <p>제40조(설치 및 명칭표시)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에 의한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p> <p>②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 표시는 "별표 1"과 같다.</p> <p>제41조(설치지역 및 기준) ①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 필요성이 큰 지역에 우선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인구 다수거주 지역 2. 사업체 등 여성인력수요가 많은 지역 3. 유사기능을 가진 시설의 유무를 고려하여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지역 <p>② 센터는 825제곱미터(250평) 이상의 면적을 지역여건에 맞게 확보하여야 하며,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무실 2. 교육실 및 강의실(실습실 포함)

현행	개정안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3. 회의실4.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5. 유아놀이방6. 강당7. 창업보육실8. 식당9. 장애인 편의시설10.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p>제42조(주요사업) 센터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1. 교육사업 : 여성의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과정 개설·운영2. 취업 및 창업지원사업 :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3. 후생복지사업 : 수강생의 자녀를 위한 유아놀이방 운영, 기타 휴게실, 식당 등 이용자 편의시설 운영4. 기타 여성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p>제43조(이용대상) 센터는 모든 여성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44조(비용의 수납) ①센터는 센터 이용자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②수납한 비용은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p> <p>제45조(운영의 위탁) ①도지사는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법 제33조 제3항에 의거 센터의 운영을 여성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여성단체는 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여성단체를 말한다.</p> <p>제46조(관리운영규정) ①수탁자는 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비용의 환불 그 밖에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당해 관리운영규정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47조(설립비·운영비 등의 지원) ①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시설비,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비와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시설기자재 설치비, 교육훈련경비,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으로 한다.</p> <p>③제2항에 의한 운영비 지원시 시설면적, 교육실적, 취업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p> <p>④설립비 및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8조(운영위원회) ①센터에는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p> <p>②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자격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p> <p>제49조(지도·감독) 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실태 전</p>

현행	개정안
<p>〈신설〉</p>	<p>반에 관하여 필요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p> <p>②도지사는 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사항·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50조(관계법령의 적용)①센터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로 본다.</p> <p>②센터는 취업정보 제공·상담·알선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직업안정법령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p>
<p>〈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p>제5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여성발전기본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p> <p>제5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여성발전기본법」 부칙 제3조에 의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별표1】

명칭 : 충청북도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
○
충청북도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충청북도지원
○○(지역명) 여성인력개발센터

위치 : 충청북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빌딩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95조 (사무의 위임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3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정책"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여성단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제33조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여성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 (여성관련시설의 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3. 남녀평등교육
4. 그 밖의 후생복지 및 문화활동의 지원